

원종동 348-6, 원종동 341-16 일원 외 2개소 노상주차장 일부구간 폐지(긴급) 행정예고

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48-6, 341-16, 삼정동 287-15, 원미구 춘의동 211-3 등 4개소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4년 11월 28일

부 천 시 장

1. 행정예고명 : 원종동 348-6, 원종동 341-16 일원 외 2개소 노상주차장 일부구간 폐지(긴급)
2. 취지 및 목적
 - 「주차장법」 제7조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 와 관련하여, 해당 구간 (오정구 원종동 348-6, 341-16, 삼정동 287-15, 원미구 춘의동 211-3 일원)의 공영주차장으로 인하여 보행안전문제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임시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- 폐지대상 : 총 5면

연번	주차장 구역	위치	면수	비고
1	오정구 원종동 348-6 일원 노상주차장	오정구 원종동 348-6 일원	2면	
2	오정구 원종동 341-16 일원 노상주차장	오정구 원종동 341-16 일원	1	
3	오정구 삼정동 287-15 일원 노상주차장	오정구 삼정동 287-15 일원	1	
4	원미구 춘의동 211-3 일원 노상주차장	원미구 춘의동 211-3 일원	1	

4. 공고방법 :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, 게시판

5. 관련근거
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주차장법 제7조(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)

6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4. 11. 28. ~ 2024. 12. 9.(11일간)

7. 의견제출

- 본 행정예고(공고)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기한 : 2024. 12. 9.(월)까지
 - 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- 제출방법
 - 1) 우 편 :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(중동)
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
 - 2) 전 화 : 032) 625-4772 3) 팩 스 : 032) 625-4759

소관부서	주차정책과	담당자 직.성명	주무관 권용한	전화번호	(032)625-4772
------	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